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4 | 2026.3.23 (2026.3.16~2026.3.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기술수준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지원과제로「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총 49개의 유망 기술품목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하는 등의「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4인)」** ,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3인)」** ,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 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1인)」** ,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민·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기후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재경위>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발표(중소벤처기업부) 7
- 「공공조달 AI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조달청)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재정경제부) 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9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12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15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7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1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4인) 18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1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9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3인) ·····	2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	2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	2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2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1인) ·····	23
•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2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	24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	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	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	26
•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 ·····	2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	28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	28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의원 등 10인) ·····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	30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4)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 [방송통신(TMT)]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대응 방안 모색
- [기업지배구조]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 [방송통신(TMT)]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4. - 2026. 3. 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발표 - AI·디지털트윈 등 핵심분야 중심, ‘기술혁신형’과 ‘수요기업 활용형’으로 맞춤형 지원 - 2026년까지 14대 전략분야로 확대,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본격화	2026-03-19
---------	--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기술수준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지원과제로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총 49개의 유망 기술품목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5년 10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이행으로, 스마트제조 산업의 기술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총 14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 중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해 7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로드맵을 수립했음. 선정된 7대 분야는 ①빅데이터/AI, ②CPS/디지털트윈, ③생산관리 시스템, ④물류관리시스템, ⑤식별시스템/머신비전, ⑥제어시스템/컨트롤러 ⑦통신네트워크장비임.

* (‘26년 확대) ⑧산업용 로봇, ⑨스마트장비, ⑩센서/엑추에이터, 경영·설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AR/VR/MR, 컨설팅/사이버보안

정책 간 정합성과 시장성장성을 고려하여 총 49개의 유망 기술품목을 도출하고, 기술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효성을 높였음

기술혁신형(18개)은 초기 시장 진입과 고난도·고성능의 선행기술 확보가 목적으로,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와 국가 차원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지향

수요기업 활용형(31개)은 주류 시장과 성숙 기술 중심으로, 3년 이내 기술개발이 가능하며 현장 확산 및 중소·중견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DX·AX) 촉진을 목표로 함

이번에 도출된 로드맵은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중기부의 스마트제조 R&D 투자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과 현장 수요 기반 연구개발 기획에 활용될 예정임

또한, 중기부는 2026년에 로드맵 범위를 7대 분야에서 14대 분야로 전면 확대하여 스마트제조 분야의 공백 영역을 최소화할 계획임

조달청

「공공조달 AI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조달 특화 AI 인프라 구축 및 AI 서비스 확산 추진

2026-03-19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 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I)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1) 조달 특화 ‘안전한 AI 기반’ 마련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 공공조달 AI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계 시스템을 구축

(2) 현장 체감 AI 서비스 확산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

- ① (진입·발주) 초보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제도 및 입찰정보 컨설팅, 입찰참가자격 신규·변경 등록 시 제출사항 등에 대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발주 경험이 적은 수요기관을 위해 제안요청서를 자동 생성하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시 기초자료 요약·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지원
- ② (가격관리) 물품 유사 구매실례가격 분석을 통해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조달청 쇼핑몰과 민간쇼핑몰 간 가격 비교 기능을 제공
- ③ (심사·평가) 우수제품 지정심사 등 각종 심사·평가 시 제안서 요약, 제품별 규격서 비교 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
- ④ (계약관리) 공사발주정보·기업별 생산능력 등을 분석하여 조달청이 관리하는 4대 관급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조달계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제공으로 분쟁·소송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
- ⑤ (공급망 관리) 조달청이 관리 중인 비축물자의 구매·방출·재고·비축공간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과 비축 의사결정을 지원

(3) 지속 가능한 ‘AI 전환(AI) 실행체계’ 구축

업무 분야별 AI 서비스 발굴·기획, 서비스 직접 개발, 서비스 운영·관리, 직원 역량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인 ‘공공조달 AI TF’를 운영. 전 직원의 AI 이해력 제고를 위해 AI 보안·윤리 및 데이터 활용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시로 외부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

(4)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유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 후 공공구매로 초기 시장을 제공하며,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와 입찰 시 우대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AI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도 방안 추진 중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6-06-18 시행 예정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¹⁾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20 시행
-------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석유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17 시행
-------	-----------------	---------------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항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불공정 수입 철강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수입 철강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26-09-18 시행 예정
-------	-----------------------------------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2026-09-18 시행 예정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①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②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③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 (제18조제1항)
- ④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 ⑤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제25조의16 신설)
- ⑥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의17 신설)

국토교통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7-03-18 시행 예정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6-18 시행 예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7. ~2026.04.17.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1항, 별표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내역 제시
- 각 비용의 세부적 내용은 별표1로 세부적으로 정함

② 소규모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 완화 (안 제8조 제2항)

-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세부 내역 제공을 생략하고 각 항목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00-3164, 팩스: 02-2100-0325\)](tel:02-2100-3164)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8. ~2026.03.27.
-------	----------------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26.2.26)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상 대항조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②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함
- ③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추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④ 할당관세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함
- 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tel:044-215-443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0.
~2026.04.30.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예정('26.6.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① 금융회사의 범위 신설 (안 제1조의4 신설)
- ②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신설 (안 제13조의5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 044-204-7903, 팩스: 044-204-798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8.
~2026.04.27.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6.
~2026.04.27.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전화: 02-2100-3102, 팩스: 02-2100-3007\)](tel:02-2100-310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026-03-16 발의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6조의2)		
법제사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2026-03-17 발의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전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2026-03-16 발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 보유 목적이나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5)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26-03-17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26-03-17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26-03-17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2026-03-18 발의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4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026-03-19 발의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각종 시장 교란행위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2026-03-20 발의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안 제56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은 휘발유·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3인)

2026-03-18 발의

최근 선진국의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양안 관계 긴장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조달 기간 장기화 및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기술이전 제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약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용 반도체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이로 인해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통제 조치 발생 시 국방 전력 운용에 필수적인 핵심 반도체 부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수 반도체 산업 중심의 시장 구조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첨단 센서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성능에 크게 좌우되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산 국방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2026-03-16 발의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2026-03-17 발의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등 11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부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는 현행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인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보다 분양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의 법률 근거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2026-03-17 발의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026-03-16 발의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후단·제38조의3·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6-03-17 발의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 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2026-03-18 발의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음.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자금, 기술개발, 청정생산 구축 등 정책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점증하는 기후환경위기 속에 놓여있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 및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그린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이제는 의무·규제를 넘어 민·관의 협력하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2026-03-17 발의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 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때에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6-03-17 발의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과 태양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에너지는 상당한 활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이용 구조는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하여 지역 단위의 열수요 분석과 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산업 폐열 회수,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열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2026-03-19 발의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5인)

2026-03-19 발의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
인)

2026-03-19 발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주요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03-20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의원 등 10인)

2026-03-16 발의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2026-03-16 발의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2026-03-20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전체회의	3/23(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국방위	법안소위	3/23(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24(화) 14:00	- 법안 의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3/24(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24(화) 14:00	- 법안 의결
문체위	전체회의	3/24(목) 14:00	- 법안 의결
기후위	전체회의	3/24(화) 14:00	- 기후부 및 기상청 소관 법안 상정, 현안 보고 등
	전체회의	3/25(수) 14:30	-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전체회의	3/26(목) 14:00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23(월) 10:00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국회포럼	김영호·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4(화) 10:00	2026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어기구·이상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4(화) 10:00	성차 과학 및 성차 의약학 활성화 정책 토론회	백혜련·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3/24(화) 10:00	유통·제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이재관·박범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3/24(화) 13:30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강선영·부승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4(화) 14:00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국회 정책 토론회	고동진·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5(수) 10:00	"제품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이학영·서영교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3/25(수) 10:00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박정현·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3/26(목) 13:30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2026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6차 금융포럼	박지원·주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6(목) 14:00	경기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부승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7(금) 14:00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제1차 바이오 분야	이주희·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3/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5호(통권 제293호) 발간	국회도서관	
	3/25(수)	「Data+」 제2026-5호(통권 제29호) 발간		
	3/25(수)	「금주의 서평」 제2026-11호(통권 제770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4호(통권 제292호)	국회도서관	
	3/18(수)	「Data+」 제2026-4호(통권 제28호)		
	3/18(수)	「금주의 서평」 제2026-10호(통권 제769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17(화)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4)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3/17(화)	방송통신(TMT)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대응 방안 모색
3/18(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3/19(목)	방송통신(TMT)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3/20(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4. - 2026. 3. 17.)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